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47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3월 7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8년 12월 28일 고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300), 2019년 1월 31일 김경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382)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19. 3. 7)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특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위원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임신한 여성의원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함(안 제24조제2항).
-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변경함(안 제37조제6항).
-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37조 제9항 신설)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임신 중의 여성위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제37조제6항 중 “20명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생략)</p> <p><u>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 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7조(특별위원회) ①~⑤ 생략</p> <p>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<u>20명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.</p> <p>⑦~⑧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임신 중의 여성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(특별위원회) ①~⑤ 현행과 같음</p> <p>⑥ -----<u>15명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⑦~⑧ 현행과 같음</p> <p><u>⑨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특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3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.</p>